



손해보험의 이해 1: 손해보험의 개념 및 특성

김동겸 선임연구원

■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¹⁾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상품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며,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약정한 급여 지급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계약임.
 -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 발생으로 야기되는 경제생활의 불안을 경감시켜주는 보험의 고유한 특성인 위험보장 기능이 공통적으로 존재함.
- 제3보험은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급여지급을 약속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의미함.
 - － 제3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에 관한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생명보험은 아니며,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해보험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음.
- 한편,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분류하고 있으며,²⁾ 손해보험은 화재,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보험으로 인보험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재분류함.

■ 손해보험계약은 보험금 지급 형태, 보험의 목적,³⁾ 보험자 대위의 존재여부, 보험기간 등에서 생명보험 계약과 차이를 보임.

1) 「상법」 제638조에서는 보험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2)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며(「상법」 제665조), 인보험(人保險) 계약은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지급을 약정한 것임(「상법」 제727조).

3) 보험의 목적(items subject to loss)이란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객체로 피보험자의 재화 등을 의미함.

- 첫째, 손해보험의 경우 계약 성립 시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을 미리 알 수 없는 불확정보험이라는 점에서 정액보험인 생명보험과 차이를 보임.
 -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생명보험의 경우 계약체결 당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함.
- 둘째, 손해보험은 물건 또는 기타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과 차이가 존재함.
 - 손해보험은 자연인이나 법인, 유체물이나 무체물이든 피보험이익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모두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인보험은 자연인에 한하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
- 셋째, 손해보험은 실손보상 원칙이 적용되므로 보험자 대위⁵⁾가 인정되나, 인보험은 대부분 정액보험으로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지 않음.
 - 다만, 상해보험과 같이 실손보상 개념이 있는 인보험의 경우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해 보험자 대위가 인정될 수도 있음.
- 넷째, 손해보험은 생명보험에 비해 보험기간이 단기라는 특징을 보임.

〈표 1〉 보험상품의 분류 및 정의

구분	「보험업법」상 정의	보험 종목
생명보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생명보험, 연금보험
손해보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¹⁾ 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화재, 해상, 자동차, 보충, 재보험, 책임, 기술, 권리, 도난, 유리, 동물, 원자력, 비용, 날씨보험
제3보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상해, 질병, 간병보험

주: 1) 질병, 상해 및 간병은 제외함.

- 4)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란 어떤 물건에 우연한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특정인이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물건 사이에 개재하는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즉,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경제적 이익을 나타냄.
- 5) 보험자 대위(subrogation)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이나 책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함.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을 통해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험자대위를 인정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을 이행한 한도 내에서 잔존물이나 청구권을 취득하게 됨.